



독일 연방정보보호법(3)

지난 호에서는 연방정보보호법의 구체적 내용 중 제1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제2장을 살펴보겠다.

제2장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정보의 가공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적용범위, 정보의 수집·저장·변경 및 이용, 정보의 전달, 연방기구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통지, 정보의 수정·삭제 및 폐쇄,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선임·법적 지위 및 임무 등에 관한 것이다.

1. 적용범위

제12조는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에 관한 것으로 연방의 공공 부문이 공법상의 기업으로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연방의 공공 부문에 적용된다. 정보보호가 주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한,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0조는 다음의 경우, 즉 공공 부문이 연방법을 실행하고 공법상 기업으로서 경

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법기관으로서 활동하고 행정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공공 부문에 적용된다.

개인관련 정보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직무상 또는 노동법상의 법률관계를 위해 수집, 가공되거나 또는 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0조 대신, 제28조 제1항과 제3항 제1호가, 제33조 내지 제35조와 마찬가지로, 개인관련 정보가 자동화되어 가공되지 않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거나 또는 이를 위해 수집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

2. 정보의 수집

제13조는 정보의 수집(Datenerhebung)에 관한 것으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은, 책임 있는 부문의 임무 수행을 위해 그들이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다. 개인관련 정보가 관련 당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공공

부문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에는, 그 부문은 보고 할 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규정, 그 밖에 그의 진술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특별한 종류의 개인관련 정보는(제3조 제9항)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 ① 법규정이 이를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② 관련 당사자가 제4a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동의한 경우
- ③ 관련 당사자가 심리적인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생활에 중요한 이익의 보호를 위해 그가 동의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 ④ 관련 당사자가 공개할 것을 명백히 한 정보에 관한 것일 경우
- ⑤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상당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⑥ 공익을 위해 중요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또는 공익에 중요한 이익의 보존을 위해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⑦ 건강배려, 의학적 진단, 건강보호 또는 처치의 목적으로 또는 보건당국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상응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의료고용인 또는 그 밖의 자에 의해 이러한 기록의 가공이 행하여지는 경우
- ⑧ 학문적 연구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연구계획의 실천에 대한 학문적 이익이 수집 제외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능가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방법에 의해 연구 목적이 전혀 도달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않은 지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 ⑨ 위기 극복 또는 분쟁방해 영역에서 연방 공공 부문의 방어 또는 국가 간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이유가 요구되는 또는 인도적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3. 정보의 저장 · 변경 및 이용

제14조는 정보의 저장 · 변경 및 이용(Datenspeicherung, -veraenderung und -nutzung)에 관한 것이다. 개인관련 정보의 저장 · 변경 또는 이용은, 책임 있는 부문이 행하여야 할 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정보의 수집목적을 위해 행하여진 경우에 허용된다. 수집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그것이 저장된 목적을 위해서만 변경되거나 이용되어질 수 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저장 · 변경 또는 이용은 단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 ① 법규정이 이를 예정하거나 강제적으로 전제된 경우
- ② 관련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③ 관련 당사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가 다른 목적을 알고 그의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경우
- ④ 관련 당사자의 신고가, 그 부정확성에 대한 사실상의 근거가 존재함으로 인해 조사되어야 하는 경우
- ⑤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나, 비



록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목적 변경을 제외함에 있어 명백히 우월한 경우일지라도, 책임 있는 부문이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⑥ 공공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 또는 공적 안전보장을 위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중요한 이익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⑦ 범죄행위 또는 규정위반 행위의 소추를 위해, 강제집행을 위해 또는 형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의 형벌 또는 조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⑧ 타인의 권리의 심각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⑨ 학문적 연구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즉 연구계획에 대한 학문적 이익이 목적 변경의 제외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상당히 능가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않은 지출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다른 목적을 위한 가공 또는 이용은 다음의 경우, 즉 감독 및 통제권의 인식, 회계검사, 또는 책임 있는 부문을 위한 관리조사의 실행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또한, 관련 당사자의 우월적인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책임 있는 부문에 의한 교육 및 검사목적에 위한 가공 또는 이용에도 적용된다. 단지 정보보호통제, 정보보호의 목적을 위해 또는 정보가공시설이 규정에 적합한 운영을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는 단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특별한 종류의 개인관련 정보(제3조 제9항)의 저장·변경 또는 이용은 단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수집이 허용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학문적 연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즉 연구계획에 대한 학문적 이익이 목적 변경의 제외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상당히 능가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않은 지출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에서 연구계획에 대한 학문적인 이익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13조 제2항 제7호에서 언급된 목적에 따른 특별한 종류의 개인관련 정보(제3조 제9항)의 저장, 변경 또는 이용에 대하여 제13조 제2항 제7호에서 언급된 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

4. 공공 부문에로의 정보전달

제15조는 공공 부문에로의 정보전달(Datenuebermittlung an oeffentliche Stellen)에 관한 것으로, 공공 부문에로의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은 다음의 경우, 즉 전달하는 부문 또는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제3자의 관할에 존재하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제14조에 의해 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전달의 허용을 위한 책임은 전달하는 부문이 지게 된다. 전달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면, 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전달의 허용을 위한 조사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달의 의뢰가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제3자의 임무의 범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부문이 조사하게 된다.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제3자는 이러한 정보가 그에게 전달되는 이행목적을 위해 가공되거나 이용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달되는 개인 관련 정보들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그 밖의 개인 관련 정보와 그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대리될 수 없는 지출에 의해서만 가능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의 전달은 다음의 경우, 즉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비밀유지에 대해 명백히 우월하지 않은 한 허용된다.

5. 비공공 부문에로의 정보전달

제16조는 비공공 부문에로의 정보전달(Datenermittlung an nicht-oeffentliche Stellen)에 관한 것으로, 비공공 부문에로의 개인 관련 정보의 전달은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즉 ① 전달하는 부문 또는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제3자의 관할에 존재하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제14조에 의해 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② 정보가 전달되어야 할 제3자가 전달될 정보에 대해 아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신빙성 있게 신고된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전달을 제외하는 데에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특별한 종류의 개인 관련 정보의 전달은(제3조 제9항) 그 이용이 제14조 제5항, 제6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전달이 법적인 청구권의 주장, 실행 또는 방어를 위해 요구되어진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전달의 허용에 대한 책임은 전달하는 부문이 부담한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달하는 부문이 그의 정보의 전달에 대해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정보를 전달받는 제3자는 이러한 정보를 그에게 전달되는 목적을 위해서만 가공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전달하는 부문은 이를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가공이나 이용은 단지 제1항에 따른 전달이 허용되거나 전달하는 부문을 동의한 경우에 허용된다.

6. 연방행정기구에서의 정보보호의 실천

제18조는 연방행정기구에서의 정보보호의 실천(Durchfuehrung des Datenschutzes in der Bundesverwaltung)에 관한 것이다. 연방정부 또는 최고 연방관청으로부터 법적인 감독이 행하여지는 최고 연방관청, 공법상의 연방독립기관, 영조물 및 재단 등은 다른 정보보호를 위한 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통신법에 따라 전속적인 권리가 존재하는 한, 특별재산인 독일 연방우정청이 법률에 의해 설립한 기업의 이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공 부문은 투입된 정보공개시설에 대한 표



시를 하게 된다. 그의 자동화된 가공을 위해서 가공의 법적 기초와 마찬가지로 제4e조에 따른 신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19조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Auskunft an den Betroffenen)과 관련한 것이다. 관련 당사자에게는 위임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이 고지되어야 한다. 즉 정보의 출처와 관련되어 있는 범위에서 저장된 정보, 정보가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는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위 및 저장목적 등이다. 신청서에는 제공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제1항은 법률 및 정관에 부합하거나 또는 계약상의 보존규정에 의해 삭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저장되어지는 경우 또는 단지 정보 보호 또는 정보보호통제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정보제공에 부적합한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의 제공이 헌법보호관청, 연방정보기구, 국방 관련 부서 그리고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다른 연방국방성의 또 다른 관청에로의 개인정보의 전달에 관련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보의 제공은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된다. 즉 ① 정보제공이 책임 있는 부문의 관할에 있는 임무의 규정에 적합한 이행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② 정보제공이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위협하게 하거나 또는 그 외에 연방 또는 주의 공

익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③ 정보와 저장사실이 특별히 제3자의 우월적인 정당한 이익으로 인해 법규정에 따라 또는 스스로의 인식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④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이 후퇴되어야만 하는 경우 등이다.

정보제공의 거절시, 결정이 뒷받침되는 사실상의 그리고 법적인 근거의 통지에 의해 정보제공의 거부로 인해 초래되는 목적이 위협해지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이유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당사자는, 그가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수탁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시의 관할권 있는 최고 연방관청이, 이를 통해 연방 또는 주의 안전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정보의 제공은 무상으로 행하여진다.

8. 통지

제19a조는 통지(Benachrichtigung)에 관한 것으로, 정보가 관련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된 경우라면, 관련 당사자는 수집·가공 또는 이용의 목적규정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저장 및 책임 있는 부문의 동일성에 대해 보고받아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정보의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가 이들에 대해 전달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경우라면, 보고받아야 한다. 전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보고

는 늦어도 최초의 전달 시에 행하여져야 한다.

통지에 대한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관련 당사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 저장 또는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경우, ② 관련 당사자에 대한 보고가 부적합한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③ 개인관련 정보의 저장 또는 전달이 법률에 의해 명문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9. 정보의 수정, 삭제 및 폐쇄: 이의권

제20조는 정보의 수정, 삭제 및 폐쇄(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von Daten: Widerspruchsrecht)에 관한 것이다. 개인관련 정보는, 그것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한다. 자동화되어 가공되지 않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으로 저장되지 않은 개인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의 정확성이 관련 당사자에 의해 다투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자동화되어 가공되지 않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으로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는 다음의 경우 삭제되어야 한다. 즉 그의 저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의 관할에 있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책임있는 부문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삭제 대신 다음의 경우에는 폐쇄가 행하여지게 된다. 즉 ① 법률 및 정관에 부합하는 또는 계약상의 보존기한으로 인해 삭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에 의해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특별한 저장방식으로 인해 삭제가 불가

능하거나 상당하지 않은 고액의 지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 등이다.

정보화되어 가공되었거나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으로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는, 다음의 경우 또한 폐쇄된다. 즉 문장의 정확성이 관련 당사자에 의해 다투어지고 있고, 정확성이나 부정확성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 개인관련 정보는, 관련 당사자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부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그의 특별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수집·가공 또는 이용에 대한 책임있는 부문의 이익을 증가하는 경우라면, 자동화된 가공을 위해서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가공을 위해서 수집·가공 또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동화되어 가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으로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는, 관청이 개별적인 경우에 폐쇄 없이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것과 관청의 임무수행을 위해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폐쇄되어야 한다. 폐쇄된 정보는 다음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즉 학문적 목적이나 현존하는 증명필요성의 제거를 위해서, 그 밖의 책임 있는 부문 또는 제3자의 우월한 이익에 존재하는 이유가 면책될 수 없는 경우 또는 폐쇄되지 않을 경우 정보가 이를 위해 전달되거나 이용되어질 경우 등이다.

정보전달의 범위에서 이러한 기록이 저장을 위해 계속 보존되어야 하는 부문은, 만약 부적합



한 지출이 요구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삭제 또는 폐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정보의 폐쇄에 대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10.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호출

제21조는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호출(Anrufung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의 권리가 연방 공공 부문에 의한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또는 이용에 있어 침해되어진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 의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또는 이용은 이것이 행정업무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만 유효하다.

11.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선임

제22조는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선임(Wahl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에 관한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의해 그의 법률상 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찬성으로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연방수탁자는 그의 선임 시 연령이 35세를 넘어야 하며, 연방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수탁자는 연방내무장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된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독일 국민의 복지를 위해 바치며, 그의 이용을 증대하며, 손해를 방지하며, 헌법과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방어하며, 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대해 정의를 실천할 것을 선서한다. 또한 이를 맹세한다” 이러한 서약은 또 한 종교적인 선서 없이 행하여진다.

연방수탁자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의 재선임이 허용된다. 연방수탁자는 연방에 대해 동 법률에 의하여 공법상의 직무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는 그의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되어 있으며 단지 법률에 따르게 된다. 그는 연방정부의 법적 감독하에 있는데, 연방내무성의 직무감독을 받게 된다. 연방수탁자는 그의 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조달할 수 있다.

연방수탁자가 잠정적으로 그의 직무수행이 방해받는 경우에, 연방내무성은 그 직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방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

12.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법적 지위

제23조는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법적 지위(Rechtsstellung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에 관한 것으로,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직무는 임명장의 교부와 함께 시작한다. 임기의 만료 및 면

직에 의해 그 임무가 종료된다. 연방대통령은 연방수탁자가 면직을 요구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제안에 의해, 중신 법관의 직무로부터의 면직을 정당하게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연방수탁자를 면직케 한다.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 연방수탁자는 연방대통령으로부터 발급된 문서를 수령하게 되는데, 면직은 문서의 교부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연방내무장관의 요청 시에 연방수탁자는 그의 후임자의 임명 시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를 진다.

연방수탁자는 그의 직무 이외에 다른 어떠한 유형의 직무, 영리행위 그리고 직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결코 영업과 관련한 기업 또는 연방 또는 각 주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집행 또는 감독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는 유상으로 법원에서의 감정을 행하여서도 안 된다. 연방수탁자는 그의 직무상 보유하게 된 선물에 대해서 연방내무성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방내무성은 선물의 사용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연방수탁자는, 그의 특성상 연방수탁자로서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자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권리의 실행에 대해 연방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연방수탁자의 협력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연방수탁자의 증인거부권이 미치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달, 제출 또는 다른 서류 등에 대해서도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수탁자는 또한 그의 임무의 종료에 따라, 그에게 직무상 고지된 사안들에 대해서 침묵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는 직무상의 교류 또는 명백하거나 또는 비밀 비준수에 따라 그리 중요하지 아니 한 사실에 대한 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연방수탁자는, 비록 그가 더 이상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라도, 연방내무성의 동의 없이 법원에서 또는 법원 외에서 진술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있어 그의 준수가 요구되는 법률상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연방수탁자가 정보보호에 대한 침해를 확정하였다면, 그는 이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는 거부되어야 한다. 즉 그 진술이 연방 또는 각 주의 공공에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공공 임무의 수행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하거나 또는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이다. 감정을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거부될 수 있는데, 즉 감정을 하는 것이 직무상 이익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13.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에 의한 통제

제24조는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에 의한 통제(Kontrolle durch den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에 관한 것이다. 연방수탁자는 연방의 공공 부문에서 동 법률 규정 및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에 대한 다른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통제한다. 연방수탁자의 통제는 다음의 경우, 즉 ① 연방의 공공 부문으로부터



터 취득한 내용 및 서신교류·우편교류 그리고 장거리통신교류에 관한 개인관련 정보, ② 직업상의 비밀 또는 특별한 직무상의 비밀, 특별히 제30조에 따른 과세비밀에 대해 신고규정이 두어진 개인관련 정보에 확장된다.

연방의 공공 부문은 임무수행 시에 연방수탁자와 그의 수탁자를 지원할 의무를 진다. 특별히 다음의 즉, 모든 자료에 대한, 특히 저장된 정보 그리고 정보가공프로그램에 대한 열람과 마찬가지로, 제1항에 따른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항시라도 직무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과 제19조 제3항에서 언급된 관청은 연방수탁자 및 그로부터 서면으로 특별히 위임된 수탁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다. 제2문은, 최상급 연방관청이 개개의 경우에 고지 또는 열람하는 것이 연방 또는 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라면, 이 관청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수탁자는 그의 공공 부문에 대한 통제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특히 개인관련 정보의 가공 또는 이용 시 확정된 결함의 제거를 위해서, 정보보호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와 연결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은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의 통제를 위해 각 주의 관할권이 있는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14.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를 통한 이의제기

제25조는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를 통한 이의제기(Beanstandungen

durch den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와 관련한 것이다.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해 연방수탁자가 동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 또는 정보보호에 대한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관련 정보의 가공 또는 이용에 있어 그 밖의 결함을 확인하였다면, 그는 이를 연방정부에서는 관할 상급 연방관청을 상대로 하여, 연방철도재산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장표명을 할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관할권 있는 감독관청에 이를 보고한다.

연방수탁자는 특별히 사소한 또는 그러한 가운데 제거된 결함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의제기를 포기하거나 해당부문에 대한 입장을 포기할 수 있다. 입장표명에는 연방수탁자의 이의제기에 근거하는 조치의 기술이 담겨져야 한다. 본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서 언급된 부문들에 대해서는 관할권 있는 감독관청이 동시에 그 입장을 담은 서신을 연방수탁자에게 보내도록 한다.

15.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그 밖의 임무

제26조는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그 밖의 임무(Weitere Aufgaben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에 관한 것이다.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는 독일연방의회에 2년에 한번 활동보고를 한다. 보고와 함께 정보보호의 실질적인 발전에 대하여

공지한다. 연방수탁자는 독일 연방의회 또는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감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독일 연방의회, 소청위원회, 내무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소청에 따라 연방의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정보보호 사건 및 경과에 대한 지시에 따른다. 연방수탁자는 연방정부와 제12조 제1항에서 언급된 연방 부문에 대해 정보보호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정보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언급된 부문들은, 이들이 권고 또는 협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방수탁자를 통해

보고되어야 한다. 연방수탁자는, 제38조에 따른 감독관청과 함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주에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준수의 통제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공공 부문과의 협동작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류 승 훈

(선문대 법대 교수)